



제 1197호

2014년 10월 10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례 제120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조 례 제120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조 례 제120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조 례 제120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 조 례 제1204호	인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28

규 칙

○ 규 칙 제86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1
○ 규 칙 제86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88

훈 령

○ 훈 령 제30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95
-------------	------------------------------	----

공 고

○ 공 고 제2014- 1546호	2014. 9월 수시분 및 7월 독촉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추가)	108
○ 공 고 제2014- 1549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공고	110
○ 공 고 제2014- 1552호	공시송달 공고	111
○ 공 고 제2014- 1554호	공시송달 공고	113
○ 공 고 제2014- 15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2-10호선외 2개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114
○ 공 고 제2014- 1578호	공인 신조 폐기 공고	115

고 시

○ 고 시 제2014- 120호	도로명주소 고시	133
○ 고 시 제2014- 1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325, 1-326, 2-613호선)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35

회 람								
----------------	--	--	--	--	--	--	--	--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0월 10일

남동구 조례 제120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896명” 을 “895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9명” 을 “20명” 으로 한다.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3% 이내	34% 이내	31% 이내	4%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비 율	-	50% 이내	50% 이상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동
총 계		915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u>912</u>	-			
	2급	1	1			
	4급	6	4	1	1	
	5급	<u>61</u>	<u>32</u>	2	8	19
	6급 이하 계	844	-			
별정직 계		<u>2</u>	-			
	5급 상당	-				
	6급 상당 이하 계	2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민선6기 출범에 따라 구청장 비서실을 단순 의전역할이 아닌 단체장의 의사결정이나 역점사업에 참여하는 등 기관장의 직무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총 정원 915명(변동없음)
 - 집행기관 : (현행) 896명 → 895명
 - 의회사무기구 : (현행) 19명 → 20명
- 별정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별표 2]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현 행 (%)	34%이내	34%이내	32%이내	-
조 정 (%)	-	50%이내	50%이상	-

-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현황 [별표 3]
 - (현 행) 별정직 5급 1명 → (조정) 행정직 5급 1명
 - (일반직) 911명 → 912명 (+ 1명)
 - (별정직) 3명 → 2명 (△1명)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0월 10일

남동구 조례 제120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과장·지소장, 사업소의 장”을 “과장·지소장”으로 한다.

제3조 중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주민생활국,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및 안전행정국”을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국, 경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제4조의3 및 제4조의4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안전총괄실) 안전총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재해 대비 안전 총괄 및 조정
2.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5조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8조) 제목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행정국에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및 토지정보과”를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및 토지정보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문화, 관광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평생교육지원과 및 문화체육과”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보육정책과 및 평생교육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사회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수산개발과, 녹색성장과, 청소과 및 환경보전과”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수산개발과, 청소과 및 환경보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및 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제3호 “지역경제 및 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경제 및 친환경에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7호로 한다.

제4장(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을 삭제한다.

[별표1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가목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내지 제11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리책임부서 “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실”로 하고, 제10조제5항제5호중 “기획예산실장, 농수산개발과장, 건설과장, 안전관리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안전

총괄실장, 농수산물개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리책임부서 “평생교육지원과”를 “평생교육과”로 하고, 제7조제1항중 “평생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재난대응 총괄 지휘·조정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재난안전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강화하여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 민선6기의 구정방향인 구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부서를 재조정하는 등 구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조 정 후	증 감
구 본 청	4국 3실 25과	4국 4실 26과	증) 1실 1과
의 회 사 무 국	1국	1국	-
직 속 기 관	3과 1지소	3과 1지소	-
사 업 소	3사업소	-	감) 3사업소
동	19동	19동	-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0월 10일

남동구 조례 제120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을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동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4”와 같다”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삭제하고,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나. 휴업·폐업 신고 다. 시정명령 등 라. 개설허가의 취소 등 마.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바. 부정의료업자 단속 사.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 아. 의료지도원 임명 자.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차. 과징금 처분 카. 과태료 부과·징수 등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의료법」 제40조 「의료법」 제63조 「의료법」 제64조 「의료법」 제61조 「의료법」 제64조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의료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의료법」 제84조 「의료법」 제67조 「의료법」 제92조	보건소장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나. 지도·감독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3. 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	
	4.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 인정 나.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5.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나.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및 휴·폐업 신고 수리 다. 안경업소의 지도·감독 라. 안경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개설 등록의 취소 등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보건소장
	6.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 가. 약국 개설등록 나. 폐업, 휴업, 재개업 및 변경신고 다.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약사법」 제20조 「약사법」 제22조 「약사법」 제76조	
	7. 대마재배에 관한 권한 가.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신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8.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권한 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나. 의료기기 변경신고 다. 휴·폐업 신고 라.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제16조 「의료기기법」 제11조 「의료기기법」 제13조 「의료기기법」 제32조	
	9.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권한 가. 시체해부 나. 시체해부 명령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6조	
	10.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업무 나.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업무 다. 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관한 업무 라. 과태료 부과징수 마. 금연을 위한 조치 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사. 보건교육의 실시 등 아.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자. 영양지도원에 대한 임명 차.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업무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카.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업무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보건소장
	11. 감염병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나.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다.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라.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마.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바. 감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 내성감시 사. 건강진단 아.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자.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차. 오염장소등의 소독조치 카. 감염병의 예방조치 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파.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약품 등의 비축 하.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19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2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7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8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법」 제4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거.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너.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등 더.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7조	보건소장
	12.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소독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다. 소독업무의 대행 명령 라. 소독업자에 대한 기타 행정처분 마. 영업의 정지명령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2조의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9조	
	13.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환자의 취업제한 및 재취업 나. 입원명령 다. 결핵환자등의 의료 라. 결핵 집단 발생시의 조치 마. 결핵검진 바.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결핵예방법」 제13조 및 제14조 「결핵예방법」 제15조 「결핵예방법」 제18조 「결핵예방법」 제10조 「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예방법」 제19조	
	1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자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수립 나. 검진 및 역학조사 다. 치료권고 라. 치료 및 보호조치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4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	
	15. 감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 또는 임시에방접종 나. 예방접종의 공고 다. 예방접종증명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시행규칙 제22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마.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보건소장
	17.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 나.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 관리 등 다. 피임약제 등의 보급 라. 과태료 부과·징수	「모자보건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모자보건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모자보건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18. 암관리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암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암관리법」 제5조	
	19.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나. 비용의 지원	「치매관리법」 제12조 「치매관리법」 제18조	
	20.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시 건강진단 실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21.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나. 지도 및 보고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11조	
	22.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의료기관 허가취소 또는 폐쇄 나. 과징금처분 다. 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 라.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정신보건법」 제12조 「정신보건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정신보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마. 사회복귀시설의 폐쇄 등 바. 청문 사. 보고·검사 등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자. 퇴원자 일시적 보호조치 차. 정신보건자문의 위촉	「정신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정신보건법」 제20조 「정신보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정신보건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보건소장
	23. 의료인 단체 설치신고	「의료법」 제28조	
	24.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사회건강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5조	
	25. 산후조리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모자보건법」 제15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7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	
	26.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	
	27.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검진 실시 나. 급여비용의 예탁	「의료급여법」 제14조 「의료급여법」 제27조	
	28. 공중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나. 공중위생영업의 승계신고 다.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라. 보고요구 및 출입·검사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 같은 법 제3조의2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마.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바.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사. 과징금 처분 아. 청문 자.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차.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카. 공중위생감시원 임명 타.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파. 위임 및 위탁 하. 수수료 거. 과태료 부과징수 너. 위생교육 행정지원 더.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같은 법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같은 법 부칙 제5839호 (1999.2.8) 제3조	보건소장
	29.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등 나. 면허증의 재교부 등 다. 면허취소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30. 식품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출입·검사수거 등 나. 식품 등의 재검사 다. 식품위생감시원 임명 등 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임명	「식품위생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마. 영업허가 및 신고 등 (조건부 영업허가 포함)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보건소장
	바. 영업 승계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사. 식품위생교육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아. 품질관리 및 보고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자. 위해식품 등의 회수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9조	
	차. 식품 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카. 위생등급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	
	파. 위생수준 안전평가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	
	하. 시정명령·시설 개수명령·허가취소 등	같은 법 제71조·제74조·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거.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너. 위해식품 등의 공표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더. 품목 제조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	
	러.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같은 법 제77조	
	머.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같은 법 제78조	
	버.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79조	
	서. 청문	같은 법 제81조	
	어.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처. 위반사실 공표 등 커.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 터. 식품진흥기금 퍼. 포상금 지급 허. 수수료 고. 과태료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 같은 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보건소장
	31.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등 나. 결격사유 다. 면허취소 라. 면허증의 재발급 마. 면허증의 반납	「식품위생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0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3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및 판매업 영업신고 등 나. 영업의 승계 다. 출입·검사수거 등 라. 시정명령 마. 폐기처분 등 바. 시설의 개수명령 등 사. 영업허가 취소 등 아. 폐쇄조치 등 자. 청문 차. 과징금 처분 카. 포상금 지급 타. 권한의 위임·위탁 파. 과태료 부과징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3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3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다.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라.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바. 시정명령 등 사. 청문 아. 과태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보건소장
	34. 특별사법 경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출석요구 나. 사건 송치 및 의견서 작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호제21호, 같은 법 제6조 제6호 제18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65조	
	35.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등록변경 등 나. 검사결과 통보 수리 및 등록대장 관리 다. 시정 명령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의료법」 제63조	
	36.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나. 폐업·휴업·재개 신고수리 다.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등 라. 폐기 명령 등 마. 등록 취소, 청문 바. 약사 감시원의 임명 및 배치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같은 법 제44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6조의3,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시행령 제39조	보건소장
	37.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라.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 응급 의료시설 설치·운영 마.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바. 구급차등의 사용금지 사. 구급차등의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 아. 의료기관 및 구급차운용자의 업무정지등 처분 자. 청문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구청장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명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복지정책과)	1.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동 장
구청장 (노인장애인과)	1.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 장
	2.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처리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6조	
	3.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진단사항 확인	「장애인복지법」 제3조	
	4.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청소과)	1.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동 장
구청장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명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동 장
	2.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단,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되 구청장도 발급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법」 제30조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동 장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민선6기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소 폐지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재정비하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누락된 사무를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사업소 폐지에 따른 사무위임 권한 삭제
- 직속기관(보건소) 누락된 위임사무 정비 [별표2]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권한
 - 응급의료에 관한 권한
- 사업소 위임사무 삭제[별표 3]에 따른 별표 순위 조정
 - 기존 [별표4] → [별표3]으로 변경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0월 10일

남동구 조례 제120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하며”를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 근무자로 하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1”을 “인천광역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대여점 운영규정에 따라 반환한다”를 “인천광역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침에 따른다.”로 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4항 중 “반납 지연 시에는 별표2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한다.”를
“ 반납·배상에 대한 것은 인천광역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지침을 준용
한다.”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운영지침인 「2014년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안내」의 주요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영유아 장난감대여점의 회원가입 대상 확대 (안 제6조제2항)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 근무자’
- 연회비 징수 내용 개정 (안 제9조제1항, 제2항 및 별표1)
 - 연회비는 운영지침을 준용하도록 개정 : [별표1] 삭제
- 연회비 면제 규정 일부 삭제(안 제9조제3항제3호)
 - 양육수당 및 보육료가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됨에 따라 해당 규정 삭제
- 연체에 대한 내용 개정 (안 제9조제4항 및 별표2)
 - 연체는 운영지침을 준용하도록 개정 : [별표2] 삭제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0월 10일

남동구 조례 제1204호

인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인천남동구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각 동조직 및 협의회, 부녀회, 문고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2.“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3.“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3.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운동 조직 또는 새마을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 안정적인 새마을운동 추진 근거로 삼고자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경비 지원(안 제3조)
-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경비 지원(안 제3조)
-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 경비 지원(안 제3조)
-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안 제3조)
-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공제 가입(안 제6조)
-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포상(안 제7조)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0월 10일

남동구 규칙 제86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제3조의3 및 제3조의4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안전총괄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의2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주민생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과장 및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6조(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청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농수산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생활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며,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중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을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하고, “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을 “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의2 앞의 “제4장 사업소”를 삭제한다.

제1절 ‘남동문화예술회관’을 삭제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삭제한다.

제2절 ‘지식정보센터’를 삭제한다.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를 삭제한다.

제3절 ‘남동체육관’을 삭제한다.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을 삭제한다.

[별표2의2]를 삭제한다.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및 동장에게”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실·과·사업소의 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을 “직속기관장 및 동장”으로 하고, 제17조제2항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을 “직속기관장 및 동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구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출장소”를 “구 본청 및 보건소”로 하고, 제2항 중 “구 본청, 보건소 및 사업소”를 “구 본청 및 보건소”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보건소 또는 구의 기타 행정기관(사업소, 동)”을 “보건소 또는 동”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7조, 제11조제2항, 제22조제1항 중 각각의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를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로 하고, 제6조제15호 중 “보건소·사업소·동 주민센터”를 “보건소·동 주민센터”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사업소)을 삭제한다.

⑧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본청·구의회·직속기관·사업소”를 “본청·구의회·직속기관”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나목 중 “안전행정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별표 1] 구본청사무분장표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획 예산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기구 직제 및 정원관리(무기계약근로자 포함)
	4. 조직 및 인력 진단
	5.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6.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총괄
	7. 지시사항 처리총괄(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등)
	8.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9. 구정발전시책 및 제안(창안)제도 운영
	10. 정책조정위원회 운영
	11.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
	12. 사무의 위임·위탁 및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
	13. 군수·구청장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
	14. 정부3.0 추진 총괄
	15.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무
	16.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무(자매결연 사업 포함)
	17. 공무 국외여행 추진
	18. 구정 백서 발간
	19.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20.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21. 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운영
	22. 예산의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에 관한 사항
	23. 투·융자 심사에 관한 업무
	24. 도시관리공단에 관한 사무
	25. 예비비 및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26.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27.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28.	예산 배정에 관한 사무
	29.	예산의 전용, 이체, 이용, 변경사용
	30.	기금운영 총괄조정
	31.	지방채무 관리에 관한 사무
	32.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무
	33.	민자 유치사업 지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4.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사무
	35.	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36.	공탁금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
	37.	성과관리제 및 자체평가 업무
	38.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39.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40.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의 법제심사
	41.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 공포
	42.	고시, 공고, 훈령, 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43.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 해석
	44.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업무
	45.	의회 운영 지원
	46.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업무
	47.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
	48.	통계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49.	통계의 심사, 통제, 분석, 공표
	50.	통계 자료의 수집 및 간행물 발간
	51.	산업, 광공업, 농·어업, 사업체, 인구주택 총조사 등에 관한 업무
	52.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안전 총괄실	1.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2.	안전문화·의식 진흥	정책에 관한 사무(주민 안전 교육 및 홍보)	
	3.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4.	지역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5.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6.	주민안전정책	총괄	
	7.	재난관리 기금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	
	8.	전시 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9.	재난안전관리업무 실태평가	업무 총괄	
	10.	재난 공시에	관한 사무	
	11.	기타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	
	12.	특사경 지원 및	업무 총괄	
	13.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	운영	
	14.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상황판단회의	
	15.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총괄	
	16.	재난관리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7.	자연재난	총괄복구계획 추진	
	18.	재해구호	총괄계획 수립	
	19.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풍수해, 지진, 폭염, 가뭄, 폭설, 한파, 풍랑)	
	20.	재해예방	경감사업 추진	
	2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추진	
	22.	지진피해저감사업(지진가속도계측기, 위험도평가단)	추진	
	2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	
	2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관리 및 해소방안 수립에 관한 사무	
	25.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재해정보지도)	작성	
	26.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제공	
	27.	풍수해보험	운영에 관한 사무	
	28.	자연재해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 전시	
	29.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30.	자율방재단 운영 관리
31.	방재물자 관리
32.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3.	해수침투방지용 수문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4.	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35.	4대악 범죄 예방사업 총괄
36.	재난 및 국가기반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37.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총괄관리
3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사무
39.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지원 총괄
40.	재난대비 교육·훈련 총괄
41.	지역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무
42.	특정관리대상시설 총괄계획 수립
43.	초고층 및 지하연계건축물 안전관리
44.	안전점검모니터 운영 및 관리
45.	안전점검의 날 운영
46.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47.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48.	각종 민원(방범, 어린이범죄예방 등)처리 및 CCTV 설치장소 선정
49.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50.	통합관제센터 및 CCTV 구축·운영 종합 계획 수립
51.	재난안전 통합관제 운영체계 도입 및 시행
52.	확장서비스(u-Service) 및 지능형서비스 개발·도입
53.	CCTV통합관리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
54.	CCTV 관련 부서·유관기관(학교, 경찰) 업무협의 및 협약 추진
55.	관제인력 채용 및 관리
56.	통합관제센터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57.	개인영상정보보호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감사실	1. 감사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2. 자체종합감사에 관한 사무
	3.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사법기관 통보 및 공무원 범죄처리에 관한 사무
	5. 공직기강 및 사정에 관한 업무
	6. 사무인계 · 인수사항 확인 관리
	7. 감사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
	8. 청렴도에 관한 사무
	9.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10. 중요정보 및 민원사항 조사 처리
	11. 첩보 · 진정 · 투서에 관한 사항
	12. 상급기관 이첩민원처리에 관한 사무
	13. 특정(기획)감사에 관한 사무
	14. 보조금 등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
	15.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에 관한 사무
	16. 민원사무 처리 실태 조사
	17. 신문 및 방송 보도사항 등 동향조사 처리
	18. 현장 및 안전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홍보 미디어실	1. 홍보 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2. 각종 시책의 홍보 등에 관한 사무
	3. 구정 활동 홍보 등에 관한 사무
	4. 각종 언론매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5. 구정 현황 소개(영상, 슬라이드 등 제작)
	6. 구정 기록에 관한 사무(사진, 영상)
	7. 구보 발간에 관한 사무
	8 U-City 관련 사업 총괄
	9. 방송통신융합서비스(IPTV 등) 발굴 및 확산
	10. 스마트워크센터 시범 구축에 관한 사무
	11. 모바일 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무
	12. 소셜 미디어 운영 사무
	13. 스마트 워크 추진 사무
	14.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시행
	15. 정보화 사업 법제도에 관한 사무
	16. 정보화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17. 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 및 관리
	1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무
	19. 정보화사업 타당성 및 예산심의에 관한 사무
	20.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중복개발) 조정
	21. 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
	22. 우수정보시스템 도입 및 보급에 관한 사무
	23.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무
	24.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및 관리
	25. 행정포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26. 행정정보와 공간정보간 연계활용
	27. 웹서비스(홈페이지, 웹솔루션 등) 운영 관리
	28. 행정정보(지킴이시스템, 백업시스템 등) 운영 관리
	29. 행정정보망(내부, 외부망) 운영 관리

	30.	정보시스템실 및 컴퓨터 교육장 운영 관리
	31.	IP통합관리시스템운영
	32.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33.	행정정보화 전산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4.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5.	지역정보화 및 정보격차해소 추진에 관한 사무
	36.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관리
	37.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 및 문서유통에 관한 사무
	38.	공공데이터개방에 관한 사무
	39.	공공아이핀 및 행정전자서명에 관한 사무
	40.	공공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해소에 관한 사무
	41.	정부원격근무지원에 관한 사무
	42.	행정전화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43.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시설 개발 및 관리
	44.	국가정보통신망, 통신회선 등의 통합 관리
	45.	인터넷전화 시스템 및 모사전송기, IP 동보방송시설 운영 관리
	46.	정보통신보안
	47.	인터넷 방송시설 운영 관리
	48.	정보통신에 관한 주택건설 승인 협의
	49.	데이터 통신장비 운영 및 회선 관리
	50.	정보통신기술 교육에 관한 사무
	51.	무선국 운영에 관한 사무
	52.	기타 행정 통신에 관한 사무
	53.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업무
	54.	건축물 착공전 정보통신설계도서 검토 승인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1.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2.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항
	4. 시·구민의 날 행사 종합계획 수립 업무
	5.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6.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사무
	7. 공무원의 관외출장 통제
	8.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운영관리
	9. 직장보육시설 관리 운영
	10. 자체 직장 민방위 및 예비군 운영관리
	11. 구청사 방호 및 시설의 이용·배치에 관한 사항
	12. 의식 행사 의전 접대에 관한 사항
	13. 민간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표창
	14. 공무원 건강진단 및 복리후생
	15. 공무원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관한 사항
	16. 인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
	17. 공무원의 인사관리
	18.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
	19.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
	20. 공무원 교육 및 피교육자 차출
	21.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22. 공무원증 발급 및 신원조사 의뢰
	23. 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24. 공무원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25.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무
	26. 공무원 고충심사 처리 및 상담해결
	27. 상시학습실 운영 등에 관한 사무
	28.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29.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30.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및 지도감독
31.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32.	동 기능 전환 관련업무 총괄
33.	기타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4.	동의 명칭 및 위치·구역의 변경
35.	통·반조직의 승인조정 및 관리
36.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보 제작
37.	지방행정동향 및 각종 여론관리
38.	기관행사 및 회의의 조정통제
39.	확대간부회의 운영관리
40.	적십자회비 모금운동 및 회비 수납지원
41.	동 행정의 종합관리 및 실적평가
42.	아르바이트대학생 관리
43.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지도
44.	생활공감정책 지원 및 관리
45.	마을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46.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47.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8.	기타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무
49.	주민등록 관리 및 주민전산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
50.	주민등록 및 외국인 인구 통계에 관한 사무
51.	주민등록증 관리 및 주민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무
52.	인감및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관한사무
53.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54.	행정사 등록에 관한 사무
55.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사무
56.	새마을금고인가 및 지도관리
57.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58.	한국자유총연맹 등 타 과에 속하지 않은 사회단체 관리
59.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운영
60.	환경순찰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61.	직장협의회 운영 및 공무원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2.	직원복지회 운영 관리
	63.	일제강점하강제동원및과거사정리,6·25전쟁납북피해자 진상규명 등에 관한 사무
	64.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 관리
	65.	사회복무요원 관리
	66.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무
	67.	총무계획의 총괄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68.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69.	민방위훈련,교육의계획수립및시행
	70.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자원관리
	71.	직장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관리
	72.	주민신고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무
	73.	민방위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무
	74.	민방위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75.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 장비에 관한 사무
	76.	기타 민방위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77.	전시 병무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재 무 과	1. 세출예산정리 및 결산
	2.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3. 회계문서의 심사 및 검수
	4. 공사도급 및 용역의 계약
	5. 물품 제조, 수선 및 구매계약
	6. 물품의 매입심사 및 검수
	7. 구청사 유지 관리 및 청소관리업무
	8. 차량운영관리
	9.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10. 시 및 구 공유일반재산의 대부, 매각 및 유지관리
	11. 구청사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12. 물품 정수관리, 수급계획 수립 및 재물조사
	13. 정수물품의 출납, 처분, 사용, 보관 관리 및 총괄
	14.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15. 공공시설의 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세무1과	1. 금고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
	2. 일반회계 자금관리
	3.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규칙 등 제·개정 및 폐지
	4. 지방세정 운영 평가 및 표창
	5. 지방세 전산화 추진 및 관리
	6. 지방세 수입 및 결산
	7. 영수증 원본 수불 및 관리
	8. 납세보호관 사무
	9. 지방세, 농특세 등 집계 및 수납관리
	10. 세정자료의조사와통계연감작성
	11.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업무
	12.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
	13. 지방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14.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업무
	15. 기부금품 모집 심사에 관한 사항
	16. 수입금 출납사무
	17.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
	18.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계획수립 및 전망분석
	19. 지방세 가산금 조정
	20. 지방세 구제업무(소송수행 등)에 관한 사항
	21. 지방세 과세대장 정리 및 관리
	22. 지방세 납세홍보 및 교육
	23.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진달
	24. 지방세 독촉고지 및 체납액 징수
	25.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6.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
	27.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28. 재산조회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
	29.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30.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31.	지방세 세무조사
	32.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수립 및 총괄 추진
	33.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34.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35.	기타 개별주택과 관련한 업무
	36.	주민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37.	기타 지방세와 관련된 유사한 업무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세무2과	1.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지도감독
	2. 세외수입 목표액 책정 및 징수 전망분석
	3. 세외수입의 수납관리 및 전산화 추진
	4. 세외수입 집계 및 영수필통지서 관리
	5. 세외수입 체납정리 총괄 및 지원
	6.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제·개정 및 폐지
	7.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요율 조정
	8. 총괄 채권관리 및 보고업무
	9.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업무
	10.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
	11.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계획수립 및 전망분석
	12. 지방세 가산금 조정
	13. 지방세 구제업무(소송수행 등)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과세대장 정리 및 관리
	15. 지방세 납세홍보 및 교육
	16.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진달
	17. 수입금 출납사무
	18. 지방세 체납관리·독촉고지 및 체납액 징수
	19. 기타 지방세와 관련된 유사한 업무에 관한 사항
	20.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1.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2.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3.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4.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5. 리스 및 렌트 차량 유치·관리에 관한 사무
	26. 체납 정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총괄 추진
	27. 지방세 징수포상금 업무
	28.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체납 처분
	29.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규제
	30. 지방세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31. 교부청구 업무
	32. 지방세 카드납부 관리
	33.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34. 징수촉탁서 처리업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문화 체육과	1. 지방 문화 예술단체의 설치운영
	2. 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사무
	3. 향토 문화재의 발굴 육성 등에 관한 사무
	4. 공연장 등록과 공연에 관한 사항
	5. 출판사 및 인쇄 등록에 관한 사항
	6. 구사 편찬 사료수집 및 발간에 관한 사무
	7.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8. 관광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9. 여행업에 관한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0. 관광편의시설업에 관한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관광숙박업에 관한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2.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유통관련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3.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유통관련업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4. 생활·직장체육 활동의 지원
	15.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 등에 관한 사무
	16.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17. 건전 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18. 건전 생활 활성화 시책수립 추진
	19. 공원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20. 남동소래아트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1.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
	22. 남동구 여성합창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3. 소래역사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민원 봉사과	1.	관인보관에 관한 사무		
	2.	공인등록, 재등록, 폐기 및 인영 등록, 공고		
	3.	민원서류 접수·관리 및 민원사무의 심사		
	4.	전화민원(ARS) 및 우편민원 접수, 관리		
	5.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6.	민원1회 방문처리제 상황의 종합관리		
	7.	종합민원신고센터운영		
	8.	민원24(정부민원포털)관리운영		
	9.	인터넷민원(새올민원광장)		
	10.	민원사무 제도 개선		
	11.	행정서비스현장 운영관리		
	12.	고객만족(CS)행정 추진		
	13.	친절운동 추진관리		
	14.	인감증명발급(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1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		
	16.	지적민원발급(폐쇄도면, 대장 및 환지에정지 증명 등)		
	17.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18.	출입국 사실 증명 관련 사무		
	19.	여권발급에 관한 사무		
	20.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제증명		
	21.	국내거소자 거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제증명		
	22.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사무		
	23.	수형인 명부관리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무		
	24.	가족관계등록 전산 운영에 관한 사무		
	25.	채무불이행자 명부관리		
	26.	문서수발 및 우편물 관리		
	2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28.	기록물 정리·이관·폐기		
	29.	자료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30.	비밀기록물 관리
	31.	행정정보공개운영에 관한 사무
	32.	문서고 관리
	33.	시청각기록물 관리
	34.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
	35.	간행물 및 행정자료실 운영관리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토지 정보과	1.	지적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적	측량 성과검사 등에 관한 사무	
	3.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무	
	4.	측량결과도 및 결의서	보존관리	
	5.	지적측량	수행자 지도감독	
	6.	그 밖에 지적 및 측량표지	에 관한 사무	
	7.	토지 이동지	일제 조사	
	8.	지적 공부	관리에 관한 사무	
	9.	디지털 지적	구축 사업에 관한 사무	
	10.	지적재조사	사업	
		가.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한 업무	
		나.	경계결정 및 조정금 의결 등에 관한 업무	
		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라.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마.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관한 사무	
	11.	토지(임야) 신규 및 분할	등에 관한 사무	
	12.	토지분할허가(개발제한구역 제외)	에 관한 사무	
	13.	종전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운영에 관한 사무	
	14.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관리	
	15.	공유토지 분할	에 관한 사무	
	16.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17.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에 관한 사무	
	18.	지적전산 및 전산자료제공	에 관한 사무	
	19.	조상땅 찾기	에 관한 사무	
	20.	사단·재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관리(법인 제외)	
	21.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22.	토지이용계획도	보존관리 사무	
	23.	지적 행정 일반	에 관한 사무	
	24.	토지이용계획 변동사항	정리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25.	토지표시 변경 등기축탁에 관한 사무
	26.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에관한사무
	27.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등에 관한 사무
	28.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29.	토지거래계약허가 등에 관한 사무
	30.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
	31.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 업무
	32.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33.	무등록공인중개사 및 미이용 토지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34.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3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무
	36.	주택거래신고제 운영
	37.	개발부담금 대상 관리 및 부담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38.	부동산실명법 운영에 관한 사무
	39.	도로명 부여 및 변경 사무
	40.	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 사무
	41.	상세주소제도 추진에 관한 사무
	42.	주소 일괄변경 사무
	43.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관리업무
	44.	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
	45.	국가기초구역에관한사무
	46.	국가지점번호제도추진에관한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복지 정책과	1. 남동구 사회복지사무 조정·통계 등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2. 호국보훈 및 의사상자에 관한 사무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4.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관한 사무
	5.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6.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조정·시행·평가에 관한 사무
	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한 사무
	8.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9.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시스템에 관한 사무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망 관리에 관한 사무
	11. 동 복지위원회 및 희망복지지원단에 관한 사무
	12.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무
	13.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14. 이웃돕기에 관한 사무
	15.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무
	16.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17.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18. 방문형 서비스 사업 연계 협력에 관한 사무
	19.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방문 상담
	20.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무
	21.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관한 사무
	22. 자활기금 운용·관리
	23. 주거복지에 관한 사무
	2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
	25. 다문화가족 지원 및 관리
	26.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7.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에 관한 사무
	28. 외국인 지원시책에 관한 사무
	29. 결혼중개업소 신고 및 관리
	30. 그 밖에 주민생활국 사무의 총괄 및 지원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사회 보장과	1.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2. 한센 양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무
	3. 의료급여 지원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무
	4.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무
	5.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노인 장애인과	1. 노인복지 증진 및 효 실천에 관한 사무
	2.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무(업무관련)
	3.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사무
	4.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무
	5.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6. 무료급식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7. 장사 등에 관한 사무
	8.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9. 노인단체에 관한 사무
	10. 노인복지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
	11.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2.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무
	13.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에 관한 사무
	14.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무
	15.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사무
	1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추진에 관한 사무
	18.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19.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가정 복지과	1.	여성정책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	
	2.	여성의 사회·문화교육에 관한	사무	
	3.	여성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무	
	4.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가족친화 인증에 관한	사무	
	5.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6.	아이돌봄사업 지원	사무	
	7.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8.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무	
	9.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방지에 관한	사무	
	10.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무	
	11.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무	
	12.	성폭력·가정폭력 및 여성상담에 관한	사무	
	13.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에 관한	사무	
	14.	요보호아동 시설입소에 관한	사무	
	15.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16.	결식우려아동 급식에 관한	사무	
	17.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사무	
	18.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9.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관한	사무	
	20.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1.	청소년위원회 설치 운영		
	22.	청소년 복지시설 신고		
	23.	청소년 선도 및 상담 지도		
	24.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사무	
	25.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26.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사무	
	2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무	
	28.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관한	사무	
	29.	숙박형등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30.	청소년 수련시설 허가, 등록		
	31.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보육 정책과	1. 보육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2. 어린이집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무
	3. 무상보육 지원에 관한 사무
	4. 영유아무상보육 자격책정에 관한 사무
	5.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무
	6. 어린이집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7. 보육교직원 관리에 관한 사무
	8.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9.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무
	10. 어린이집 인가, 휴·폐업
	11. 특수어린이집 지정 및 관리
	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위탁
	13.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개보수
	14. 어린이집 지도점검
	15. 어린이집 행정처분
	16. 보육멘토 업무
	17.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평생 교육과	1.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2.	학교 · 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3.	지역교육사업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 업무 지원		
	4.	지역우수자 대학 전형 지원에 관한 사항		
	5.	취학사무에 관한 사항		
	6.	각급 학교 표창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경비보조금(초 · 중 · 고등학교)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8.	교육경비보조금(사립유치원)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9.	혁신학교 지원 관리에 관한 사무		
	10.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무		
	11.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무		
	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13.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14.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관련 사무		
	15.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16.	평생교육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무		
	17.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18.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0.	평생학습 시설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기타 평생학습도시 발전과 관련된 사항		
	22.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일자리 정책과	1.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2.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운영에 관한 사무
	3.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4. 구인·구직 알선 등에 관한 사무
	5. 취업정보 전산망 운영관리
	6.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무
	7.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무
	8. 공공근로 사업 추진 및 관리
	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10.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등록, 신고에 관한 사무
	11. 유·무료직업소개사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12. 남동구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무
	13.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무
	14. 지역고용거버너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15. 협동조합 일반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업 지원과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사무
	2. 공장등록(변경)에 관한 사무
	3. 공장 신·증설에 관한 사무
	4. 광업허가에 관한 업무
	5.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련 업무
	6.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운용
	7. 승강기 사후관리 업무
	8. 계량기에 관한 사무
	9. 어린이놀이시설(놀이제공업소) 관리
	10.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11.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확인 등에 관한 검사업무
	12.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무
	13. 남동인더스파크 육성 종합계획
	14. 남동인더스파크 기업관리 및 지원업무
	15.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
	16. 남동인더스파크 기업애로 해결
	17. 중소기업자금 융자 알선
	18.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등에 관한 사무
	19. 공산품 전시장 운영관리
	20. 남동인더스파크 가동상황 보고
	21.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22. 중소기업의 기술 지원
	23. 남동인더스파크 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관리 지원
	24. 각종 민원서류(민원24) 신청 및 발급
	25.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박람회 시장성 조사·평가·추진
	26. 국내외 산업시장 동향파악 관리

	27.	각종 기업정보제공 전산화 시스템 작업추진 운영관리
	28.	혁신 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29.	산업단지내/외 동종업종간 클러스터 추진
	30.	산·학·연·관 협의체 추진 운영
	31.	기업브랜드사업 구축사업 추진
	32.	국내외 사례연구 및 발전전략 수립
	33.	산업단지내 일자리창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34.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유치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
	35.	산업단지 관련 투자유치 업무 발굴 및 추진
	36.	산단 관련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유관업무 추진
	37.	외국인 방문 안내 및 통번역 업무 추진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생활 경제과	1. 전통시장활성화 종합추진계획 수립
	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3. 시장정비사업 인가에 관한 사무
	4.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무
	5. 시장등록 및 상인회 등록관련 업무
	6. 시장 상권활성화, 경영현대화에 관한 업무
	7. 미소금융관련 업무(전통시장 소액대출 관련)
	8. 지역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
	9. 지역유통기업 구조개선 및 시행계획 추진
	10.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11.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12.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사무
	13. 대형마트 등 영업규제관련 업무
	14. 담배도·소매업에 관한 사무
	15. 통신, 방문, 전화권유 판매에 관한 사무
	16. 대부업에 관한 사무
	17. 소비자보호 및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사무
	18. 공정무역관련 업무
	19. 가스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0. 고압가스 판매·저장·제조 및 용기·냉동기·특정설비
	21. 액화석유가스 판매,저장,제조,충전,가스용품의 제조·허가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2. 도시 가스에 관한 업무
	23.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24. LED조명기기 관련 사무

	25.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무
	26. 지역에너지 관련 사무
	27.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무
	28.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9. 석유류 품질 검사에 관한 사무
	30. 전기자동차 및 그린자동차 관련 사무
	31. 에너지 복지 관련 업무
	32. 취약지 고지대 연탄수급 지원 관련 업무
	33. 월동기 연료수급 안정 대책 등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농수산 개발과	1.	농정, 양정,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지관리에 관한 업무		
	3.	수리시설의 유지 및 관리업무		
	4.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업자재의 공급관리 등에 관한 사무		
	5.	농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에 관한 사무		
	6.	농지전용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		
	7.	식량작물 생산 지원 등에 관한 사무		
	8.	농작물병충해 방제 등에 관한 사무		
	9.	논농업, 밭농업 직접 지불사업		
	10.	전작, 원예, 특용작물에 관한 사무		
	11.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업무		
	12.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13.	농촌마을 조성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업무		
	14.	영농기반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5.	농·축산물 유통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6.	농업, 임업, 축산 통합 실시사업 추진		
	17.	양정관련 업무		
	18.	지역특산품 육성에 관한 사무		
	19.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업무		
	20.	농산물브랜드 육성사업		
	21.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22.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업무		
	23.	축산진흥에 관한 업무		
	24.	축산물 인·허가 업무		
	25.	가축 방역 및 통계 등에 관한 업무		
	26.	농·축산업 재해대책 추진 업무		
	27.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		
	28.	동물판매업 등록 및 동물등록에 관한 사무		
	29.	동물병원, 동물약국 인·허가		
	30.	가축사육업 허가 및 축산차량등록제 업무		

	31.	어장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2.	어선등록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3.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34.	수산물 가공업에 관한 사항
	35.	연안(구획)어업에 관한 사무
	36.	지방어항지정 및 무역항계 변경에 관한 사항
	37.	어업인 육성 및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
	38.	낙시통제구역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
	39.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업무
	40.	연안정비사업 시행
	41.	연안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 · 시공 및 감독
	42.	소래구역 GB해제에 관한 사무
	43.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업무
	44.	해수공급시설 운영 ·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청소과	1.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 수립		
	2.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무		
	3.	수도권 매립지 반입 관련 사무		
	4.	환경미화원 관리		
	5.	국토 대청결운동 업무 추진		
	6.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무(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클린하우스 등)		
	7.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관한 사무		
	8.	해안쓰레기 정비에 관한 사무		
	9.	적환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		
	10.	각종 청소장비 관리 운영		
	11.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관한 사무		
	12.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수급 관리		
	13.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14.	대형 소각장 건설 추진 및 운영		
	15.	재활용 사업의 육성 지원 발전		
	16.	재활용 수집·운반 및 선별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		
	17.	1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사무		
	18.	대형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무		
	19.	그 밖에 폐기물 및 재활용등에 관한 사무		
	20.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관련 업무		
	21.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관리 등의 업무		
	22.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추진		
	23.	공동주택음식물수거수수료 및 세척비 관리		
	24.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에 관한 사무		
	25.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신고에 관한 사무		
	26.	사업장 및 건설, 지정 폐기물 신고수리 및 지도점검		
	27.	의료 폐기물 신고 수리 및 지도 점검		
	2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업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환경 보전과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환경영향	평가 관련 업무	
	3.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4.	물의 재이용	관리에 관한 사무	
	5.	자연보호	관련 업무	
	6.	수렵 면허	관리 등에 관한 사무	
	7.	환경	측정망 관련 업무	
	8.	EM사업과	관련한 사무	
	9.	유독물	영업자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0.	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절수설비 의무화	제도에 관한 사무	
	13.	무허가 배출업소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4.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15.	기타수질 오염원	신고등에 관한 사무	
	16.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7.	특정토양오염대상시설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8.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	에 관한 사무	
	19.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관리	
	20.	환경기술인 교육관리	등에 관한 사무	
	21.	자동차 매연 및 배출가스	에 관한 업무	
	22.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	
	23.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4.	먹는 물	관리에 따른 수질검사 및 관리	
	25.	간이 상수도	등에 관한 사무	
	26.	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	구제 관련 사무	
	27.	빛공해	방지 등에 관한 사무	
	28.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9.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무	
	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일반 사무	

	3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검사
	32.	하수•분뇨관련영업자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3.	가축분뇨관련영업자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4.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및 대행계약등에 관한사무
	35.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변경) 허가(신고) 및 검사
	36.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
	37.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무
	38.	GCF 관련 사무
	39.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사무
	40.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관련 사무
	4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등에 관한 사무
	42.	녹색생활실천에 관한 사무
	43.	탄소배출권거래에 관한 사무
	44.	의제21 추진지원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 설 과	1. 건설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 공사용 자재 및 기구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
	3. 도로 안내표시판 설치 및 수리 등에 관한 사무
	4. 국공유재산(도로, 하천, 구거)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5.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6. 시설동원(일반토지, 건설업체,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7. 지하도검 상가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
	8. 도로굴착 허가 등에 관한 사무
	9. 하수도 특별회계(계약 및 지출)에 관한 업무
	10. 전문 건설업 등록 및 면허관리 등에 관한 사무
	11. 건설기계 관련 업무 총괄 및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무이외의 건설기계 관련 업무
	12. 공공하수도 신고 및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3. 지하수 개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방 하천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방재 관련 사무 제외)
	15. 소하천의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방재 관련 사무 제외)
	16. 도로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무
	17. 토목, 건설 공사의 조사, 측량, 시행 등에 관한 사무
	18.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19. 교량 등 구조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0. 수로원 배치관리 및 도로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1. 사도 개설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2. 기타 도로 시설물에 관한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3. 사업 관련 보상 등에 관한 사무
	24. 고속도로 통행료 강제 징수에 관한 위탁 사무
	25. 골재채취 허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6. 도로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한함. 단, 노점상·노점판매대는 제외)
	27. 지하수특별회계에 관한 사무
	28. 자전거이용시설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9.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0.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1.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
	32.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무
	33. 자전거 보관대, 대여소 신설 및 유지관리
	34.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
	35. 공동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축과	1. 건축 행정의 종합 조정
	2. 건축 행정 건실화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신발생 위법건축물(무허가) 정비 등에 관한 사무(GB, 도로 및 인도 제외)
	5. 항측 적출 위법건축물 조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무(GB, 도로 및 인도 제외)
	6. 세외 수입(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사무
	7. 건축위원회설치및운영
	8.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 제한에 관한 사무
	9.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10. 건축허가·신고관련업무에관한사항
	11.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12. 공작물 축조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건축 시공의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무
	14. 통계(건축, 주택) 업무 등에 관한 사무
	15. 건축물대장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6. 건축물대장 표시 등에 관한 사무
	17.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에 관한 사항
	18.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업무에 관한 사무
	19. 건축물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업무
	20. 건축물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사무
	22. 건축물 분양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3.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24. 공동주택 관리감사에 관한 업무
	25.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6. 공동주택 현장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무
	27.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28.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29.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30.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31.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32.	임대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33.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 운영
	34.	미분양주택 관리 사무
	35.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에 관한 사무
	36.	주택관리업 관리에 관한 사무
	37.	임대주택 관리업 관리에 관한 사무
	38.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사무
	39.	주거급여사업에 관한 사무
	40.	주택바우처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도시 관리과	1.	공공사업에 따른 보상협의 매수, 수용		
	2.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용지, 지장물 및 간접보상비 지급		
	3.	공공사업에 따른 취득재산 이전에 관한 사항		
	4.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5.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6.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		
	7.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8.	기타 도시계획 관련 업무		
	9.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0.	일반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11.	기존지구 체비지 관리		
	12.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1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사무		
	14.	주택재개발에 관한 사무		
	15.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6.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17.	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사항		
	18.	구획정리 사업 관련 각종 공사시행		
	19.	구획정리 특별회계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0.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2.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사항		
	23.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보전에 관한 사무		
	24.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도시 경관과	1. 가로정비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로(인도)상 불법 상행위 단속 및 철거 지원(단,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 제외)
	3. 도로(인도)상 적치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단,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 제외)
	4. 노점에 관한 도로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5. 옥외광고물 종합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6.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업 인허가사무
	7.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8.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무
	9.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및 관리
	10.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11. 간판개선에 관한 사업
	12.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관한 사무
	13. 도시경관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14. 도시경관위원회설치및운영
	15.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6. 경관 협정 및 운영회에 관한 사무
	17. 경관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18. 공공디자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공원 녹지과	1. 공원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2.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체육시설 제외)
	3.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5. 법령 등의 위반자 처분
	6. 과태료 부과 징수
	7. 기타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사무
	8. 도시공원대장·도시자연공원구역 대장 작성
	9.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10. 공원·녹지 조경관리 등 유지관리 사무
	11. 공원·녹지조성 종합계획 수립
	12.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설치
	13. 공원·녹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무
	14. 도시공원 시범사업
	15.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및 손실보상
	16. 시설녹지의 설치
	17. 공원녹지 리모델링에 관한 사무
	18. 장기미집행시설(공원·녹지) 집행계획 수립 추진
	19. 산림 기본 계획 수립
	20. 산림 문화·휴양 기본계획 수립
	21. 산림보호, 조림, 숲 가꾸기 사업 등에 관한 사무
	22. 임목 벌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3. 임산물 굴취, 채취 허가
	24.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무
	25. 공·사유림 내 채석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6. 국토 공원화 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27. 도시녹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8. 녹지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9. 도심 속 쉼터 조성 및 관리
	30. 둘레길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1. 숲 치유사업에 관한 사무
	32. 세외수입(수목피해 변상금)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교통 행정과	1. 교통 기획의 종합조정
	2.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영
	3. 교통안전관련 시설사업 추진
	4. 지역 교통안전계획에 관한 사무
	5.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 대상물 전수조사 및 부과 징수
	6. 지하철 및 철도 관련 업무 행정지원
	7.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등에 관한 사무
	8.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업무 등에 관한 사무
	9.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등
	10. 주·정차금지구역 관리에 관한 사무
	11. 교통 분야 공익요원 지도 관리
	12. 주차장 설치 운영
	13. 장·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
	14. 노상, 노외, 기계식,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무
	15. 민영주차장 설치 등 통보처리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자동차 관리과	1.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업무
	2. 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한 사무
	3. 시내버스(지선버스) 및 택시 운송에 관한 업무
	4. 자동차 운송 주선업에 관한 사무
	5. 자동차 창고업에 관한 사무
	6. 자가용 자동차 사용에 관한 사무
	7.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행정처분
	8. 화물자동차(용달, 개별화물) 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9.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무
	10. 자동차에 대한 개선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1. 이륜자동차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자동차의사용정지명령(자동차검사관련업무제외)등에 관한사무
	13.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징수
	14. 자동차관리과 과태료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15.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수사 및 통고처분
	16.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17.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행위 단속 등에 관한 사무
	18.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단속에 관한 사무
	19. 무단방치자동차 단속에 관한 사무
	20. 자동차 무단방치사건 수사 및 통고처분
	2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열람신청의 처리
	22.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3. 자동차 압류등록의 처리
	24.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에 관한 사무
	25.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멸실의 경우의 조치
	26. 자동차의 신규등록·등록증의 교부
	27. 자동차 신규등록의 거부
	28. 자동차등록번호판 탈·부착 및 봉인
	29. 자동차 변경·이전·말소등록

	30.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31.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32.	자동차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처리
	33.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사무
		가. 건설기계등록 및 변경등록
		나. 건설기계등록의 말소
		다.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라.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마.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
		바.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
		사. 과태료 처분

[별표2] 보건소의 사무분장표(제11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보건 행정과	1.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2. 당직근무 및 소내의 복무단속
	3. 예산·회계·물품 관리
	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등의 신고처리 업무
	6. 의료장비 및 차량관리
	7.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8. 각종 보건통계
	9. 일반진료(물리치료, 방사선)
	10.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
	13. 보건지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4. 아토피·천식 등 예방 관리에 관한 사무
	15.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의료기관에의한허가,등록,개설신고처리및지도감독
	18. 약국·의약품도매업에 의한 허가, 등록, 개설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19.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0.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응급의료에관한사항
	22. 안전상비의약품 등록(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3. 안마시술소 개설(변경)신고처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4.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변경)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5. 건강검진기관의 지정(변경)신고처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6.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소 개설(변경)신고처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7.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8. 특수의료장비의 등록(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9. 화장품판매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0. 의약업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3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1군~제5군, 지정감염병)
	32.	감염병 역학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3.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34.	식중독 검사에 관한 사항
	35.	에이즈 등 성병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6.	생물테러 및 응급실증후군에 관한 업무
	37.	해외유입전염병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
	38.	방역 소독약품 및 기자재 관리
	39.	소독업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금 지원 사업
	41.	결핵예방및치료에관한사항
	42.	각종 건강진단 및 건강검진 검사에 관한 사항
	43.	골다공증 검사에 관한 사항
	44.	의료영상 전송에 관한 사항
	45.	방사선장비 정기검사 및 일일정도관리에 관한 사항
	46.	흉부영상관리 및 CD복사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강 증진과	1.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 관리
	3.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업무
	6.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7.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9.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10. 영양플러스사업
	11. 국민영양관리사업
	12. 국민건강영양조사 업무
	13. 운동처방실 운영
	14. 절주 및 조기음주예방사업
	15.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
	16. 운동지도 및 상담사업
	17.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18. 건강검진수검자 건강상담
	19. 구강보건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0. 노인의치사업
	21. 불소용액양치사업
	22. 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운영
	23.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24. 치과진료실 운영
	25. 성교육 및 성상담사업에 관한 업무
	26.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27.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사업
	28. 신생아 난청조기검진 사업
	29. 임산부 및 영유아 교육에 관한 업무
	30. 모유수유 클리닉 사업

31.	임산부 등록 관리 사업
32.	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
33.	산모 건강관리 사무
34.	난임부부 지원 사업
35.	산모 ·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3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사업
37.	산후조리원 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
38.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
39.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관련 업무
40.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관련 업무
41.	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 관련 업무
42.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관련 업무
43.	B형간염 주산기감염사업 관련 업무
44.	취학 전 아동 시력검사 사업 관련 업무
45.	선천성대사이상질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사업
4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47.	방문건강관리사업
48.	재가암환자관리사업
49.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50.	국가암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51.	암환자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52.	희귀난치의료비지원관련업무
53.	지역사회건강조사
54.	정신보건사업
55.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및 운영지원
56.	정신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57.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업무
58.	알코올 및 기타중독 예방사업
59.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
60.	생명존중문화 조성
61.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사업

	62.	정신병의원관리에 관한 업무
	63.	치매관리사업
	64.	치매상담센터 운영
	65.	치매주간보호센터 위탁 및 운영지원
	66.	치매조기검진사업
	6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68.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지원
	69.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에 관한 사항
	70.	의료급여수급자 일반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71.	한방진료실 운영
	72.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식품 위생과	1. 공중·식품위생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중위생(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영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4. 이·미용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관련 사무
	5.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평가 등에 관한 사무
	6. 공중위생 으뜸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7. 공중이용시설 현황 및 관리
	8. 식품진흥기금 운영 등에 관한 사무
	9. 무허가 공중·식품 위생업소 지도단속
	10.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발급 및 관련 사무
	11.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등 영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
	12. 식품 제조 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13.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에 관한 사무
	14. 식품 제조 가공업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품목(변경)제조 보고 처리
	15.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에 관한 사무
	16. 모범 음식점 지정 운영에 관한 사무
	17. 맛으로 소문난 집,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정 및 관리
	18. 특색음식거리 관리에 관한 사무
	19. 식품위생 관련 홍보 및 행사 등에 관한 사무
	20. 위생단체 자율지도 관리 및 위생교육(일반, 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가공업소 등 산하 위생관련 단체관리)
	21. 좋은식단 중점추진업소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2. 한식 세계화에 관한 업무
	23. 전통 음식개발에 관한 사무
	24. 음식개발 및 지원사업
	25. 식품등 수입 판매업 영업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무
	26. 용기 포장류 제조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7.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위생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28. 일반(휴게)음식점 옥외가격 표시제 관련 사무

	29.	식중독예방사업추진
	30.	집단 급식소 관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31.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2.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위생관리 및 등급평가에 관한 사무
	33.	부정불량 식품 특별관리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3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무
	35.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36.	전통시장 위생관리에 관한 사무
	37.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성수식품 특별단속
	38.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에 관한 사무
	39.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보상금제운영
	40.	인천 김치 명품화 및 육성화에 관한 사무
	41.	식재료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42.	식품제조가공업소 지원·육성에 관한 사무
	4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간석 보건지소	1.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2. 당직근무명령 및 소 내의 직원 복무관리
	3. 예산·회계 관리
	4. 차량 및 청사관리
	5. 의료장비 등 비품 및 소모품 관리
	6. 예방접종 예진 및 만성질환자 1차 진료
	7. 만성질환사업에 관한 사항
	8.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 보건서비스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10. 물리치료 및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1. 금연, 영양, 운동 등 건강행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2. 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13.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4.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5. 보건통계 및 교육 홍보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건강증진사업
	17.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에관한사항
	19.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안정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부서 간 사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민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구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조문 신설
 - 안전총괄실 신설(안 제3조의2)
 - (현행) 안전행정국 → (조정) 자치행정국(안 제5조)
 - 기타 국별 소속부서의 직제순서 및 명칭 조정(안 제5조의2부터 제7조)
- 기구 폐지에 따른 조문 삭제
 - 사업소 관련 삭제 → 제4장(현행 제11조의2 ~ 현행 제11조의7)
- 구 본청 및 직속기관의 사무분장 변경
 - 구 본청의 사무분장 : 안 [별표1]
 - 보건소의 사무분장 : 안 [별표2]
 - 사업소의 사무분장 : 현행 [별표2의2] 삭제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0월 10일

남동구 규칙 제86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기관별·직급별 정원(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기 관	동
총 계		915	602	20	72	221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912	599	20	72	221
	2급 소계	1	1			
	행 정	1	1			
	4급 소계	6	4	1	1	
	행 정	4	3	1		
	기 술	2	1		1	
	5급 소계	61	32	2	8	19
	행 정	37	22	2		13
	의 무	4			4	
	시 설	3	3			
	행정·사회복 지	2	1			1
	행정·사서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2	2			
	행정·공업· 환경	2	1			1
	행정·농업· 해양수산	1	1			
	행정·녹지· 시설	3	1			2
	행정·보건· 간호	1			1	
	행정·보건·의료 기술·의무	1			1	
	행정·보건·의무· 간호	1			1	
	6급 소계	208	161	8	17	22

행	정	102	81	7		14
세	무	6	6			
전	산	1	1			
사회복지		4	4			
속	기	1		1		
공	업	2	2			
녹	지	1	1			
보	건	4			4	
환	경	3	3			
시	설	13	13			
방송통신		1	1			
운	전	5	1		1	3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4	4			
행정·세무		5	5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 지		17	12			5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 산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7	7			
행정·방송통 신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1	1			
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 술	1			1	
	보건·간호	5			5	
	의료기술·간 호	1			1	
	행정·사회복 지·시설	1	1			
	행정·공업· 환경	1	1			
	행정·공업· 시설	1	1			
	행정·보건· 간호	1			1	
	행정·해양수 산·시설	1	1			
	보건·의료기 술·간호	2			2	
	7급 소계	308	204	6	22	76
	행 정	116	68	3	1	44
	세 무	27	27			
	전 산	3	3			
	사회복지	34	12			22
	속 기	2		2		
	공 업	5	5			
	농 업	2	2			
	녹 지	6	6			
	해양수산	1	1			
	보 건	8			8	
	의료기술	5			5	
	간 호	5			5	
	환 경	9	9			
	시 설	37	37			
	방송통신	3	3			
	운 전	14	6	1		7
	건축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2	2			
사무운영	12	10			2
행정·사회복지	4	3			1
행정·사서	2	2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1	1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3			3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8급 소계	282	162	3	18	99
행 정	131	74	1	1	55
세 무	10	10			
전 산	4	4			
사회복지	41	14			27
공 업	8	8			
농 업	1	1			
녹 지	5	5			
보 건	9	1		8	
의료기술	4			4	
간 호	3			3	
환 경	5	5			
시 설	22	22			
방송통신	2	2			
간호조무	1			1	
운 전	9	1			8
기계운영	2	1	1		
사무운영	13	7	1		5
행정·사회복지	8	4			4
행정·해양수산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1	1			
		보건·간호	1			1	
		9급 소계	45	34		6	5
		행 정	12	8			4
		세 무	6	6			
		전 산	1	1			
		사회복지	5	5			
		사 서	2	2			
		녹 지	2	2			
		보 건	5			5	
		시 설	4	4			
		운 전	3	1		1	1
		행정·사회복 지	4	4			
		행정·방재안 전	1	1			
		연구직 계	1	1			
		기록관리사	1	1			
		별정직 계	2	2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민선6기 효율적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기관장의 직무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소 폐지 등에 따른 기관별 직렬·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관별 조정현황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증 감	-	24	1	-	△25	-
개정(안)	915	602	20	72	-	221
현 행	915	578	19	72	25	221

- 직급별 조정현황

- (현 행) 별정직 5급 1명 → (조정) 행정직 5급 1명
- (일반직) 911명 → 912명 (+ 1명)
- (별정직) 3명 → 2명 (△1명)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10월 10일

남동구 훈령 제30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및 동별”을 “실·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별”로 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6항 중 “[별표 5]”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하고 [별표 5]를 [별표 4]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 각 실·과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602	
기 획 예 산 실	일반직	계	18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7급	7	행정7
		8급	5	행정4, 전산1
안 전 총 괄 실	일반직	계	18	
		5급	1	행정1
		6급	5	행정2, 전기운영1, 행정·시설1, 행정·방송통신1
		7급	8	행정1, 공업1, 시설2, 방송통신2, 전기운영1, 공업·시설1
		8급	3	행정1, 시설1, 기계운영1
감 사 실	일반직	계	11	
		5급	1	행정1
		6급	7	행정6, 행정·사회·시설1
		7급	3	행정1, 시설1, 행정·사회·시설1
홍 보 미 디 어 실	일반직	계	2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2, 전산1, 방송통신1, 행정·전산1
		7급	9	행정1, 전산3, 방송통신1, 전화상담운영1, 기계운영1, 사무운영2
총 무 과	계		34	
	정무직	-	1	(구청장)1
	일반직	소계	31	
		3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2	행정2
		6급	8	행정8
		7급	9	행정7, 사무운영2
		8급	10	행정9, 사무운영1
	별정직	소계	2	
		5급		
		6급	1	비서요원(수행)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재 무 과	일반직	7급	1	비서요원(기사)
		계	29	
		5급	1	행정1
		6급	7	행정3, 운전1, 기계운영1, 사무운영1, 행정·공업·시설1
		7급	12	행정3, 공업2, 시설1, 운전5, 사무운영1
		8급	8	행정6, 시설1, 운전1
		9급	1	운전1
세 무 1 과	일반직	계	27	
		5급	1	행정1
		6급	4	세무3, 행정·세무1
		7급	13	행정1, 세무12
		8급	6	세무6
		9급	3	세무3
세 무 2 과	일반직	계	27	
		5급	1	행정1
		6급	6	행정1, 세무3, 행정·세무2
		7급	13	세무13
		8급	4	세무4
		9급	3	세무3
문 화 체 육 과	일반직	계	24	
		5급	2	행정2
		6급	7	행정7
		7급	7	행정6(임기제1), 시설1
		8급	4	행정4
		9급	4	행정4(임기제:무대장치, 조명, 음향기기, 학예사)
민 원 봉 사 과	일반직	계	20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7급	4	행정3, 사무운영1
		8급	9	행정9
	연구직		1	기록관리사1
토 지 정 보 과	일반직	계	21	
		5급	1	시설1
		6급	4	행정1, 시설2, 행정·시설1
		7급	10	행정2, 시설8
		8급	6	행정1, 시설5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복 지 정 책 과	일반직	계	2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7급	7	행정4, 행정·사회복지3
		8급	6	행정4, 행정·사회복지2
		9급	2	행정·사회복지2
사 회 보 장 과	일반직	계	28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8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3
		7급	6	사회복지6
		8급	10	행정1, 사회복지9
		9급	3	사회복지3
노 인 장 애 인 과	일반직	계	19	
		5급	1	행정1
		6급	6	행정3, 행정·사회복지3
		7급	6	행정3, 사회복지3
		8급	5	행정2, 사회복지3
		9급	1	사회복지1
가 정 복 지 과	일반직	계	14	
		5급	1	행정1
		6급	6	행정5,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3
		8급	3	사회복지1, 보건1, 행정·사회복지1
		9급	1	사회복지1
보 육 정 책 과	일반직	계	13	
		5급	1	행정1
		6급	4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3
		7급	4	행정1, 사회복지3
		8급	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9급	2	행정·사회복지2
평 생 교 육 과	일반직	계	14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행정·사서1
		7급	4	행정2, 행정·사서2
		8급	2	행정2
		9급	3	행정1(임기제-사서), 사서2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일 자 리 정 책 과	일반직	계	14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임기제1)
		7급	3	행정3
		8급	4	행정4
기 업 지 원 과	일반직	계	13	
		5급	1	행정1
		6급	5	행정3, 공업1, 공업·환경1
		7급	3	행정2, 공업1
		8급	4	행정2, 공업1, 공업·시설1
생 활 경 제 과	일반직	계	14	
		5급	1	행정·공업·환경1
		6급	5	행정3, 공업1, 행정·공업1
		7급	3	행정3
		8급	5	행정1, 공업4
농 수 산 개 발 과	일반직	계	14	
		5급	1	행정·농업·해양수산1
		6급	3	행정·농업1, 행정·해양수산1, 행정·해양수산·시설1
		7급	8	행정1, 농업2, 해양수산1, 시설2, 농업·수의2
		8급	2	농업1, 행정·해양수산1
청 소 과	일반직	계	18	
		5급	1	행정1
		6급	5	행정3, 행정·환경2
		7급	5	행정2, 환경2, 사무운영1
		8급	6	행정4, 환경2
		9급	1	행정1
환 경 보 전 과	일반직	계	22	
		5급	1	행정·환경1
		6급	7	행정1, 환경3, 사무운영1, 행정·환경1, 행정·공업·환경1
		7급	8	환경7, 공업·환경1
		8급	6	행정1, 공업1, 환경3, 공업·환경1
건 설 과	일반직	계	29	
		4급	1	기술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5급	1	시설1
		6급	6	행정1, 시설4, 공업·시설1
		7급	12	행정2, 공업1, 시설7, 운전1, 기계운영1
		8급	9	행정1, 공업2, 시설5, 사무운영1
건 축 과	일반직	계	22	
		5급	1	시설1
		6급	4	행정1, 시설3
		7급	10	행정1, 시설7, 세무1, 건축운영1
		8급	5	시설4, 사무운영1
		9급	2	시설2
도 시 관 리 과	일반직	계	21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1, 시설4
		7급	6	행정1, 시설5
		8급	7	행정1, 시설5, 사무운영1
		9급	2	시설2
도 시 경 관 과	일반직	계	16	
		5급	1	행정·시설1
		6급	6	행정2, 사무운영1, 행정·시설3
		7급	4	행정3, 사무운영1
		8급	5	행정2, 시설1, 사무운영2
공 원 녹 지 과	일반직	계	19	
		5급	1	행정·녹지·시설1
		6급	4	행정1, 녹지1, 행정·녹지1, 녹지·시설1
		7급	6	녹지6
		8급	6	행정1, 녹지5
		9급	2	녹지2
교 통 행 정 과	일반직	계	17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시설2
		7급	6	행정2, 시설3, 사무운영1
		8급	5	행정4, 사무운영1
		9급	1	전산1
자 동 차 관 리 과	일반직	계	24	
		5급	1	행정1
		6급	7	행정3, 사무운영1, 행정·세무2, 행정·공업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7급	5	행정3, 세무1, 사무운영1
		8급	9	행정9
		9급	2	행정2

【별표 2】 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의 회 사 무 국	일반직	계	20	
		4급	1	행정1
		5급	2	행정2
		6급	8	행정7, 속기1
		7급	6	행정3, 속기2, 운전1
		8급	3	행정1, 사무운영1, 기계운영1

【별표 3】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72	
보 건 행정과	일반직	계	27	
		4급	1	기술1
		5급	2	행정·보건·간호1, 의무1(개방형)
		6급	5	보건1, 보건·의료기술1, 행정·보건·간호1, 보건·간호1, 운전1
		7급	11	보건2, 의료기술5, 간호2, 보건·간호2
		8급	5	행정1, 의료기술2, 간호1, 간호조무1
		9급	3	보건2, 운전1
건 강 증진과	일반직	계	19	
		5급	4	행정보건의무의료기술1, 의무3(개방형2)
		6급	5	보건·간호3, 의료기술·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7급	5	간호3, 보건2
		8급	4	간호2, 의료기술1, 보건1
식 품 위생과	일반직	계	19	
		5급	1	행정·보건1
		6급	5	보건3, 행정·보건2
		7급	5	행정1, 보건4
		8급	7	보건7
간 석 보건지소	일반직	계	7	
		5급	1	행정·보건·의무·간호1
		6급	2	보건·간호1, 보건·간호·의료기술1
		7급	1	보건·간호1
		8급	2	보건·간호1, 의료기술1
		9급	1	보건1

【별표 4】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221	
구월1동	일반직	계	12	
		5급	1	행정·보건1
		6급	1	행정1
		7급	6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사무운영1, 운전1
		8급	4	행정2, 사회복지2
구월2동	일반직	계	13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운전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5	행정4, 행정·사회복지1
		9급		
구월3동	일반직	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운전1
		8급	4	행정2, 사회복지2
		9급	1	행정1
구월4동	일반직	계	12	
		5급	1	행정1
		6급	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사무운영1
		8급	5	행정3, 사회복지1, 운전1
		9급		
간석1동	일반직	계	1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5	행정2, 사회복지1, 운전1, 사무운영1
간석2동	일반직	계	1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7급	3	행정2, 운전1
		8급	5	행정3, 사회복지2
		9급	1	행정1
간석3동	일반직	계	13	
		5급	1	행정·환경1
		6급	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5	행정3, 사회복지1, 운전1
		9급	1	행정1
간석4동	일반직	계	12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8	행정3, 사회복지3, 운전1, 사무운영1
		9급		
만수1동	일반직	계	12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운전1
		8급	5	행정3, 사회복지2
만수2동	일반직	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운전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6	행정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9급		
만수3동	일반직	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4	행정2, 사회복지1, 운전1
		8급	4	행정1, 사회복지1, 사무운영1, 행정·사회복지1
		9급		
만수4동	일반직	계	11	
		5급	1	행정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5	행정3, 사회복지1, 운전1
		9급	1	행정1
만수5동	일반직	계	1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운전1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만수6동	일반직	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운전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6	행정4, 사회복지2
장 수	일반직	계	11	
서창동		5급	1	행정·녹지·시설1
		6급	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6	행정3, 사회복지1, 운전1, 사무운영1
남 촌	일반직	계	12	
도림동		5급	1	행정·녹지·시설1
		6급	1	행정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6	행정3, 사회복지2, 운전1
논현1동	일반직	계	12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5	행정3, 사회복지1, 운전1
논현2동	일반직	계	12	
		5급	1	행정1
		6급	1	행정·사회복지1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5	행정3, 사회복지2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9급	1	운전1
논 현 고잔동	일반직	계	12	
		5급	1	행정·공업·환경1
		6급	1	행정1
		7급	4	행정2, 사회복지1, 운전1
		8급	6	행정4, 사회복지1, 사무운영1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2014년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 후속 조치로, 부서 및 하부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 본청 주요 조정 내용
 - 직제변경 및 부서신설에 따른 인력 조정(이관) : 17개부서 127명
 - 국 또는 국별 소속부서의 직제순서 및 명칭변경 등
- 직속기관(보건소) 주요 조정 내용
 - 한방진료실 이관에 따른 인력 이관: 의무5급 1명, 간호8급 1명 (현행) 보건행정과 → (조정) 건강증진과
- 사업소 주요 조정 내용
 - 사업소 폐지: 3개소 총25명 → 업무이관부서로 인력이동 등
- 기타 기관별 5·6급 복수직렬 확대 : 15개 부서, 5개 직렬, 15명
- 기관별 인력 조정현황

(단위 : 명)

명)

구 분 \ 기관별	개 편 전						개 편 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915	578	19	72	25	221	915	602	20	72	-	221
일반직	911	574	19	72	25	221	912	599	20	72	-	221
정무·별정	4	4	-	-	-	-	3	3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546호

공 시 송 달

성 명 유**석외 21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2014년 9월 수시분 및 7월 독촉분 지방소득세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 발송 하였으나, “주소인 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반송함 장기방치”, “국외이주”, “직권말소” 및 “폐업” 등으로 반송 처리되어 송달 불능인 바, 당초 납기 2014.09.30일을 2014.10.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오니 기한내 금융기관 및 전자납부 등으로 납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10월 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연번	납세번호	발송지	납세자번호	개인(법인)명	과세물건	세액합계	공고사유
1	140002 2014 07 2 510 000470	울산광역시 북구 천국길 165, 102동 809호 (천국동,대동아파트)	750513-*****	유**석	경기양주고암 121-2 주원마을 212-1305(2014.02)-예정신고분	547,370	수령인없음
2	140002 2014 07 2 551 0004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461번길 42, 113동 504호 (간석동,범양아파트)	750801-*****	홍**원	경기안산단원선부1076-15 진주프라자 1(단일)-406(2014.02)-예정신고분	10,628,340	기타
3	140002 2014 07 2 560 000484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개동로38번길 44, 1동 203호 (만수동,삼화다세대주택)	620820-*****	이**자	인천남송의 59-1(2003.12)-경정결정분	4,988,720	수령인없음
4	140002 2014 07 2 581 000482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16, 316동 504호 (만수동,주공아파트)	590702-*****	김**주	인천부평산곡 257한양아파트 30-302 (2003.05)-경정결정분	1,360,240	이사감
5	140002 2014 07 2 700 00046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75번길 6-6, 402호 (논현동)	680726-*****	이**하	충남천안서북임장효계6-3 (2014.02)-예정신고분	927,740	기타
6	140003 2014 07 2 510 0020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48, 타워플러스 1103호 (구월동)	120111-*****	(주)한**지**	2012년 귀속 법인세	413,110	이사감 고지서 미송달
7	140003 2014 07 2 560 0020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37 (만수동,3층)	120111-*****	세**알**디(주)	2012년 귀속 법인세	3,220,830	이사감 고지서 미송달
8	140003 2014 07 2 710 0020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34번길 5, 202-2호 (논현동, 씨티짱)	120111-*****	(주)두**중**건**	2012년 귀속 법인세	658,760	기타 고지서 미송달
9	140004 2014 07 2 510 005808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277번길 24 (논현동)	110111-*****	이**디**퍼**주)	2014년03월귀속분(이디디컴퍼니 주식회사) :사업소득	28,270	이사감 고지서 미송달
10	140004 2014 07 2 510 005809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277번길 24 (논현동)	110111-*****	이**디**퍼**주)	2014년03월귀속분(이디디컴퍼니 주식회사) :근로소득	259,750	이사감 고지서 미송달
11	140004 2014 07 2 510 00584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7, 701호 가주프라자 (구월동)	120111-*****	모**일**키	2014년02월귀속분((주) 모바일자키) :사업소득	6,650	이사감 고지서 미송달
12	140004 2014 07 2 510 006075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41 (구월동, 씨티프라자601호)	120111-*****	다**에**엔**식**사	2014년03월귀속분(다올에프엔 주식회사) :사업소득	13,300	수령인없음 고지서 미송달
13	140004 2014 07 2 510 00609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23번길 63 (구월동,3층)	120111-*****	국**전**복**사**단**주**회**	2014년03월귀속분(국가전우복지사업단 주식회사) :근로소득	1,640	이사감 고지서 미송달
14	140004 2014 07 2 521 006007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33번길 8-3 (구월동)	124871-*****	노**법** **원**분**무**)	2014년02월귀속분(노무법인 다원 (분사무소)) :근로소득	77,950	이사감 고지서 미송달
15	140004 2014 07 2 521 006008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33번길 8-3 (구월동)	124871-*****	노**법** **원**분**무**)	2014년03월귀속분(노무법인 다원 (분사무소)) :근로소득	18,590	이사감 고지서 미송달
16	140004 2014 07 2 551 006076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99, 1205호 (간석동,아트폴리스)	124771-*****	재**영**조**법**	2014년03월귀속분(재원영농조합법인) :근로소득	2,8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고지서 미송달
17	140004 2014 07 2 551 00608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암남로26번길 39, 82호 (간석동,청실프라자 지층)	120111-*****	비**엠**리**주)	2014년03월귀속분(비엔엠코리아 주식회사) :사업소득	35,530	이사감 고지서 미송달
18	140004 2014 07 2 551 006184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99, 1동 1407호 (간석동, 아트폴리스)	110111-*****	와**제**드**투**	2014년03월귀속분(와이제이드림투어 주식회사) :사업소득	28,120	이사감 고지서 미송달
19	140004 2014 07 2 700 0058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22 (논현동)	121111-*****	주**회**기**	2014년02월귀속분((주) 기림) :퇴직소득	520,290	이사감 고지서 미송달
20	140004 2014 07 2 710 00605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199번길 96, 3층 (고잔동)	120111-*****	(주)이**라**팅	2014년03월귀속분((주) 이투라이팅) :근로소득	3,6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21	140004 2014 07 2 710 006062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340번길 7, 남동공단91블록16로트 (고잔동)	120111-*****	폐**물**동**거**영**구(주)	2014년03월귀속분(폐기물공동수거운영기구 (주)) :사업소득	4,980	이사감 고지서 미송달
22	140004 2014 07 2 710 00609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113번길 48 (고잔동,(주)위고글로벌81B-13L)	120111-*****	주**회** **원**일	2014년03월귀속분(주식회사 성원정밀) :근로소득	21,5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549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 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 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2014.10.02. 등기우편물 반송]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14.10.20.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저당)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4.10.06. ~ 2014.10.20.

2. 대상 자동차

신 청 대 상 차 량			이해관계내용	이 해 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 명	사 용 본 거 지			
경기 31나5962	장*	경기도 부천시	자동차 저당설정 을부번호:41082001003402 설정일자:2001.11.16	강 학*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21번지 *호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팀 (☎453-2941)

2014년 10월 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5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0-35(2010.05.20)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인천서창2지구 주변도로(국도42호선연결도로: 중로1-325호선)개설공사 구간 내 편입된 토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를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도로 개설공사(국도42호선)

나. 사업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사업의 위치 :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일원

2. 공고기간 : 2014. 10. 7 ~ 2014. 10. 21**3.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가. 협의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보상관리부

(주소)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10층)

(전화) 032-890-5417

나. 협의절차, 구비서류 등 제반사항은 위 협의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시송달 목록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지분	소유자	주 소
1	인천시 남동구운연동	216-4	제방	285㎡	1/8	김영실	인천 북구 작전동 호160
		216-8	제방	3㎡	1/8	김영실	인천 북구 작전동 호160

5 기 타

가.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는 송달자에게 송달된것으로 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032- 453-2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5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폐문부채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4년 10월 7일 ~ 2014년 10월 22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등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2. 당사자	성 명	이호성	생년월일	63.8.10
	주 소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88번길44-8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		
4. 부동산의 표시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7-1 남동메디칼센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징금 부과액 : 금854,577,940원 (금팔억오천사백오십칠만칠천구백사십원정)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14.11.20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법적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7.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2)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5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2-10호선의 2개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08-20호(2008.03.21.)호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소2-10호선의 2개노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동구 만수동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향촌주변도로(소2-10호선의 2개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2-10호선 (B=9.0~12.5m, L=833m)
 - 소 2-1호선 (B=8.0m, L=115m)
 - 중 3-2호선 (B=12.0m, L=84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9-1
5. 사업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 ~ 2012. 11월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578호

공인 신조 ·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인신조 ·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인 신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 폐지 부서
- 공인의 최초사용일(공인폐기일) : 2014. 10.10
- 신조 · 폐기 공인 수 : 신조(29개), 폐기(61개)

○ 신조공인명

○ 안전총괄실 신조 공인 목록 (5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안전총괄실분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안전총괄실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안전총괄실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안전총괄실채권관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안전총괄실채무관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 세무1과 신조 공인 목록 (5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세무1과분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분임징수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세무1과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 × 1.8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세무1과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 × 1.8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세무1과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4cm × 2.4cm	

○ 세무2과 신조 공인 목록 (4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세무2과분임경리관인		한글 전 서체 2.0cm × 2.0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분임징수관인		한글 전 서체 2.0cm × 2.0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세무2과분임물품출납원		한글 전 서체 1.8cm × 1.8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세무2과일상경비출납원		한글 전 서체 1.8cm × 1.8cm	

○ 사회보장과 신조 공인 목록 (3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사회보장과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 × 1.8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사회보장과분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사회보장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보육정책과 신조 공인 (3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보육정책과 분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보육정책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보육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평생교육과 신조 공인 (3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평생교육과 분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평생교육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평생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일자리 정책과 신조 공인 (3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일자리정책과 분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일자리정책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일자리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생활경제과 신조 공인 (3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생활경제과 분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생활경제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생활경제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 공고된 공인의 규격은 실물이 아니므로 실제규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공인명

○ 안전관리과 폐기 공인 목록 (5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안전관리과 분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안전관리과 채무관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안전관리과 채권관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안전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안전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 세무과 폐기 공인 목록 (6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세무과분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세무과수입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분임징수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세무과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세무과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세무과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4cm × 2.4cm	

○ 희망복지지원과 폐기 공인 목록 (3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희망복지지원과 분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희망복지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희망복지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 사회경제정책과 폐기 공인 (3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사회경제정책과 분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사회경제정책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사회경제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평생교육지원과 폐기 공인 (3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평생교육지원과 분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평생교육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평생교육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녹색성장과 폐기 공인 (3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녹색성장과 분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녹색성장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 녹색성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지식정보센터 폐기 공인 (12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폐 기 공 인	지식정보센터장인		한글 전서체 2.1cm × 2.1cm	
폐 기 공 인	지식정보센터장수관인		한글 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지식정보센터 분임장수관인		한글 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지식정보센터 경리관인		한글 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지식정보센터 분임경리관인		한글 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지식정보센터 채권관리관인		한글 전서체 2.0cm × 2.0cm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폐 기 공 인	지식정보센터 지출원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지식정보센터 수입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 기 공 인	지식정보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 기 공 인	지식정보센터 물품관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지식정보센터 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 기 공 인	지식정보센터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남동소래아트홀 폐기 공인 (12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폐 기 공 인	남동소래아트홀 관장인		한글전서체 2.1cm × 2.1cm	
폐 기 공 인	남동소래아트홀 분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남동소래아트홀 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 기 공 인	남동소래아트홀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 기 공 인	남동소래아트홀 징수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남동소래아트홀 물품관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폐 기 공 인	남동소래아트홀 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남동소래아트홀 채권관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남동소래아트홀 분임징수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남동소래아트홀 지출원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남동소래아트홀 수입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 기 공 인	남동소래아트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남동체육관 폐기공인 (12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폐 기 공 인	남동체육관장인		한글전서체 2.1cm × 2.1cm	
폐 기 공 인	남동체육관 분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남동체육관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남동체육관 분임징수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남동체육관징수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남동체육관 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폐 기 공 인	남동체육관 물품관리관인		한글 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남동체육관 채권관리관인		한글 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남동체육관지출원인		한글 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남동체육관 수입금출납원인		한글 전서체 1.8cm × 1.8cm	
폐 기 공 인	남동체육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글 전서체 1.8cm × 1.8cm	
폐 기 공 인	남동체육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 전서체 1.8cm × 1.8cm	

○노인장애인과 폐기공인 (2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출납명령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출납공무원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 공고된 공인의 규격은 실물이 아니므로 실제규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 12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26번길 15의 5전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72의 4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6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0. 0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7-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26번길	15	20091116	논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10.08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논현로26번길 1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5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69-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북로 37번길	9-7	20091116	장자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8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10.08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자북로37번길 9-7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7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69-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북로 37번길	9-5	20091116	장자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8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10.08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자북로37번길 9-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5를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산24-5외 1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 순환로 10번길	21-28	20120328	서창남순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10.08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창남순환로 10번길 21-28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1-28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3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57	20091116	남촌동을 관통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10.08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촌로 57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7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3외2 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34번길	39	20091116	청능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4.10.08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청능대로534번길 39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9를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72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22-23	2014.10.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91번길	24-1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03-14	2014.10.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183번길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3-9	2014.10.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497번길	8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7-5	2014.10.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5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31-1	2014.10.0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 1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325, 1-326, 2-61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325, 1-326, 2-613호선, 사업명 :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도로 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4년 10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운연·수산·만수동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변경 없음) : 도로(중로1-325, 1-326, 2-613호선)
 - 명 칭(변경 없음) :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규 모(변경 없음)
 - 중로 1-325호선 : B=20m, L=1,670m
 - 중로 1-326호선 : B=20m, L= 900m
 - 중로 2-613호선 : B=15m, L= 300m

○ 면 적(변경 없음)

- 중로 1-325호선 : A=60,201m²
- 중로 1-326호선 : A=41,874m²
- 중로 2-613호선 : A=5,715.7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있음)

노선명	기 정	변 경	비 고
중로1-325호선	2010.05.20~2014.12.31	2010.05.20~2015.06.31	6개월연장
중로1-326호선	2010.05.20~2016.12.31	2010.05.20~2016.12.31	변경없음
중로2-613호선	2010.05.20~2014.06.30	2010.05.20~2014.12.31	6개월연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